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

2025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일정과 필요 서류 안내드립니다.
정확하고 신속한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연말정산 대상자: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현재 계속 근로자
(일용직 근무자 · 26년도 1월 입사자 · 25년 12월 31일까지 퇴사자 **제외**)

2. 제출 방법

1) 이메일 제출 : abc123@kr-sv.com
2) 등기우편 제출: 세종시 나성로 96, B동 702호(나성동, 어반아트리움 더센트럴) (우편번호: 30128)
※빠른 등기로 보내주세요

3. 제출 기한: 2026년 2월 3일(화)까지

※기한 내 미제출 시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됩니다.

4.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일정

-서비스 시작일: 2026년 1월 15일 (목) ~
-이용 방법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후, '연말정산 간소화' 파일 내려받기
(국세청 홈택스 자료는 1월 20일까지 변경될 수 있으니, 가급적 1월 20일(화)부터 출력 및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.)

※계속 근로자: 국세청 자료 PDF다운로드 (한번에 내려받기)
※중도 입사자: **근로제공 기간만 체크**하여 한번에 내려받기
예시) 전 근무지: 1월~4월 근무 / 현 근무지: 8월~12월 근무 → 1, 2, 3, 4, 8, 9, 10, 11, 12월만 체크
(근로소득이 없는 5, 6, 7월은 체크 제외)

★★★간소화서비스 PDF출력시, **개인정보 공개O/ 문서 암호 설정 금지 / 파일명 수정 금지**★★★

■ **2025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**
-아래 <국세상담센터> URL에 접속하셔서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어 "연말정산 문답지"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-https://call.nts.go.kr/call/cm/cntnts/cntntsView.do?mi=2764&cntntsId=7042#

5. 제출 자료

※모든 서류는 **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**해주세요.
※근로자가 직접 소득·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
■ **공통 서류**

1. **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파일**
2. **주민등록표등본**
3. **연말정산 문답지 (근로자가 반드시 작성)**

■ 추가 제출 서류

제출 서류	제출 대상자	제출 방법
·주민등록표등본 *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	▶모든 근로자 -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피부양자 성함에 "공제"라고 기재 ▶부양가족 공제 요건(2025.12.31. 기준) · 나이요건: 만 20세 이하(2005.1.1.이후 출생), 만 60세 이상(1965.12.31.이전 출생) · 소득요건: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 · 장애인의 경우, 소득요건만 적용	·정부24에서 출력 ·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주민센터
·가족관계증명서 *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	·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추가 제출 -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피부양자 성함에 "공제"라고 기재	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 ·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주민센터
·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사본	·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·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(취학·취업이 곤란한 상태)인 경우	·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가보훈처 ·병원 및 의료기관 발급
·혼인관계증명서	·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(법률혼만 가능)	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 *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
·난임시술비(진료비/약제비 납입확인서) ·산후조리원 영수증	·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의료비가 있을 경우 ·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근로자	·병의원, 약국 등에서 발급 ·산후조리원에서 발급
·안경 및 렌즈(시력 교정용) 및 교복 구입비 ·의료기기 등 영수증	·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경우	·구입처
·기부금 영수증	·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기부금을 납부한 근로자	·기부단체에서 발급받아 제출
·교육비 납입증명서	·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교육비 자료가 있는 근로자 (본인 교육비/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·학원·체육시설 교육비/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등)	·교육기관(유치원, 학원등)에서 발급
·국외 교육비 납입증명서 ·재학증명서	·자녀, 형제 자매의 국외 교육비 (취학 전 아동, 초등학생, 중학생의 경우, 자비유학자격이 있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이어야 함)	·국외 교육기관에서 발급
·임대차계약서 사본 ·월세 납부 영수증 또는 월세 이체내역	·월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 -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, 세대원도 공제 가능	·월세액 지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·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·무주택확인서	·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고자 하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*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-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	·금융기관(은행)에서 발급 ·정부24
·주택자금상환 증명서 ·임대차계약서 사본	·주택을 임차하면서 대출의 원리금상환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-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, 세대원도 공제 가능	금융기관(은행)에서 발급 후 제출 *간소화 자료
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류	·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-무주택 세대주, 1주택자 또는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, 세대원도 공제 가능	·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: 개별(공동)주택가격확인서 ·대법원 인터넷등기소: 건물등기부등본 ·금융기관: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(대환, 차환, 연장 시)

·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체류자격증명서	외국인 근로자의 경우	·외국인 등록증 사본 제출 ·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
·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	·2025년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*근로소득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제출한 경우, 근로소득자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신고	·전 근무지에서 발급

※더 자세한 사항은 상단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

▶**연말정산 자료에 대한 입증 책임은 100%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**

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전액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는 근로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므로, 모든 요건 검토는 근로자 본인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직접 검토하여야 합니다.

▶**과다공제 대상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 세금을 부담**하게 됩니다.

국세청 시스템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이 전수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중공제(과다공제) 받지 않으시도록 정확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▶"의료비 세액 공제시" 치료목적이 아닌 **미용 등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**한 금액 ,

"신용카드 세액 공제시" **회사에서 개인경비 처리한 개인 카드 사용액을 제외**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.

▶의료비 중, **2025년도 실손 보험금이나 실비 등 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**됩니다.

보험금을 수령하신 근로자 분들은 서류 제출시 보험금수령 서류나 이체 내역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
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

항목	과다공제 사례
1 소득금액 기준(1백만 원) 초과 부양가족 공제	◦ 연간 소득금액(근로·사업·양도·퇴직소득 등)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(기본+추가공제) **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*
2 부양가족 중복공제	◦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◦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
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	◦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
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	◦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◦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·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
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	◦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·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
6 교육비·의료비 등 중복공제	◦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
7 주택자금 과다공제	◦ 기준시가 기준을 초과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(장기주택저당차입금) ◦ 유주택자*임에도 주택자금(월세액 공제 포함) 공제 **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*
8 교육비 과다공제	◦ 자녀,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◦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◦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(비과세)을 지원받거나,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
9 의료비 과다공제	◦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◦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「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」 상당액을 공제
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	◦ 감면대상 업종*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 ** 제외업종(예시) : 전문서비스업, 보건업, 금융 및 보험업, 교육서비스업 등*

* 1 ~ 5의 경우,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(기본공제+추가공제) 뿐만 아니라,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(보험료, 교육비, 신용카드, 기부금 등) 또한 배제